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0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민형배 · 주철현 · 김우영
이성윤 · 김문수 · 정준호
김용민 · 조계원 · 소병훈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과 국정운영 역량 뿐 아니라, 적소적재에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로 ‘좋은 인재를 가려 뽑는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역량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공직자 임명은 결국 시민 피해로 귀결합니다. 무책임한 측근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이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

나 허위제출 시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후보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하며, 이번 법 개정은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안 제12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자료제출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 사유를 해당 기간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 ----- ----- ----- ----- ----- .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3.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자료제출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

-----,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 사유를 해당
기간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그 의
결로 해당 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는 해
당 관서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
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